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956
----------	------

발의연월일 : 2017. 7. 12.

발의자 : 이종배 · 이종명 · 박명재  
나경원 · 김성태 · 박찬우  
박순자 · 김석기 · 정우택  
홍문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의 인성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려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되어 있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대해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가 없음.

한편,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환경 변화와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어려움 때문에 인성교육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학교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를 포함시켜 한국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학교의 인성교육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인성교육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6조제7항 등).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성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라 한다)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학교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 중 “교육감은”을 각각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p> <p>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p> <p>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이하 “한국학교”라 한다)</p>
<p>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 략)</p> <p>&lt;신 설&gt;</p> <p>⑦ (생 략)</p>	<p>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한국학교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⑧ (현행 제7항과 같음)</p>
<p>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 ② (생 략)</p> <p>③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p>	<p>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p>

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 -----. -----.
④ · ⑤ (생략)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u>교육감은</u>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① <u>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u>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